

운 영 위 원 회

소 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2월 25일

발의자 : 경수현, 김경이, 김육영, 박영섭,
소형준, 양순임, 이용진, 이호건,
정기혁, 정윤주, 정해숙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(안 제17조제1항, 별표 5)

-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(10일 → 2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→ 25일)

나. “해직”을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용어인 “면직”으로 개정(안 제11조)

다. 띄어쓰기 및 현행 용어 사용 등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4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3조, 제1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6. 3. 3. ~ 2026. 3. 10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9조 에”를 “제59조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령 및 직무상의”를 “법령과 직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30조의3 에”를 “법 제30조의3에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”를 “(면직된 공무원의 근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해직된”을 “면직된”으로 한다.

제13조 단서 중 “재난발생”을 “재난 발생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경조사 휴가”를 “경조사휴가”로 한다.

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0
(한번에
둘이상의
자녀를
출산한
경우에는
25일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9조에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공무원은 <u>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</u>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---- --- <u>법령과 직무상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겸임근무) ① <u>법 제30조의3</u>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겸임근무) ① <u>법 제30조의3</u>에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<u>해직된 공무원의 근무</u>) <u>해직된</u>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<u>면직된 공무원의 근무</u>) <u>면직된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사생활 보장) 의장은 공무원</p>	<p>제13조(사생활 보장) -----</p>

의원발의 조례안 종합검토 의견서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〈의회사무국〉

조례안 주요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문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문내용 - (목적)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사항(2025.2.)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)로 확대함 - (주요내용)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출산휴가 기간 확대,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		
관련 법 조 항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		
소요예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
부서 검토 체크리스트	검토 항목	검토사항 있다 없다	기타의견
	1. 이미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지?	√	
	2. 발의된 조례안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?	√	
	3. 사업(정책)집행, 예산, 효과 등에 대한 검토여부?	√	
	4.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?	√	
	5.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?	√	
	6. 집행기준 및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지?	√	
	7.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?	√	
	8. 기타 법률적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?	√	
종합 검토의견	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검토 의견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사항(2025.2.)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)로 확대하고,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화하는 등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므로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		
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2조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 총3억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장 박홍진